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74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평정 결과 공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28.
3. 회 부 일 : 2025.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Ⅲ. 검토의견

1.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평정 결과 공개

- 안 제44조의2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원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 ----- ----- ----- ----- -----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둔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2.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② (생 략)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명 3.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 ----- -----. ④ ----- ----- 외에 법관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근무성적과 ----- -----.
--	---

○ 현행법 제44조의2¹⁾ 및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3189호)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과 자질평정으로 나뉘는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 1)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자질평정의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²⁾ 매년 1회 실시하고³⁾, 판사에 대한 평정 결과는 연임⁴⁾,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평정사항 및 평정 기준>

평가사항	세부평가항목	평정기준	평가방법
근무성적	•법정에서의 소송 진행 •판결작성 •사건처리	•근무성적은 사건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율 등 기준에 따라 재량평가 •평가의 근거에 관하여는 세부 평가항목을 포괄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술 기재	항목별 서술식 평가 +근거 기재
자질평정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직무자세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	•자질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 기준에 따라 재량평가 •평가의 근거에 관하여는 세부 평가항목을 포괄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술 기재	

2)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율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3)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4)최근 10년간 (2016~2025년)연임을 희망하였으나 연임되지 아니한 법관 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임되지 아니한 법관 수	2	-	1	1	4	3	1	1	-	-

※ 연임제외로 의결된 후 의원면직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판사 수(연임희망 후 연임심사 종료 전 연임의사 철회한 경우는 제외)

자료 : 법원행정처

특기사항	•건강·성격 및 품성 •법원조직정합성	•자질 평정 항목에 포함되지만 평가결과는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	항목별 서술기재
종합평정		•우수, 보통, 노력필요, 미흡	등급식 평가
종합의견		•종합평정의 근거 및 특이사항	서술기재
인사참고사항		•인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평정사항은 아닌 내용만 기재	서술기재

자료 : 법원행정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백서 자료집」, p.248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⁵⁾, 평정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만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⁶⁾ ‘해당 연도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 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연도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음.⁷⁾⁸⁾

○ 개정안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의 공정성·객관성·

5)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7)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8)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2025년도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한 법관은 261명이었고,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법관은 7명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 및 평정 구조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정과 자질 평정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의 관료화 및 서열 중심의 문화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판사로서의 품성 및 전문적 능력과 책임부담능력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법원 외부에 의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⁹⁾,

외부에 의한 판사의 평가는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결과까지 공개할 경우 평가에 대한 지나친 논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외부의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여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전국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비대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음¹⁰⁾.

○ 따라서 법관 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와 함께

9)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자료집 하권 제8차·제9차 회의록 참조

10)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자료집 하권 제8차·제9차 회의록 참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평정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외국의 사례¹¹⁾를 보면,

일본의 경우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¹²⁾에 따라 매년 변호사가 관할법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지가 평가권자인 소속 재판소장에게 제출되면, 재판소장은 판단에 의하여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함. 또한, 「하급재판소재판관지명자문위원회 규칙」¹³⁾에 따라 최고재판소가 변호사회에 요청한 재임용 대상 재판관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지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 자료와 법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임용 대상자 적부 심의를 함.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관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주 법원 판사의 경우는 주별로 평가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상이함.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알래스카 주의 경우 3인의 변호사, 3인의 비변호사, 대법

11) 박준선, 전게서., 윤태석,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4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및 윤태석·이광수·정성희, 『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 박영사, 2016. 등 참조

12) 동 규칙 제3조에서 “평가권자는 인사 평가에 있어서 법관의 독립을 배려함과 동시에 다면적이면 서도 다각적인 정보의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관해서도 배려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동 규칙 제11조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소, 검찰청,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회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장으로 구성된 사법협의회를 설치하여 법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법협의회는 변호사,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법원직원, 배심원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콜로라도 주 사법평가위원회는 4명의 변호사와 6명의 비변호사로 구성되며, 해당 법관의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¹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집단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사법협의회는 법관의 재임선거 60일 전에 그 평가와 추천을 공개함.

독일의 경우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의 1차 평정자는 대체로 각 주의 법원장이고 최상위 평정자는 각 주의 주무장관으로, 조직 내의 근무평정만이 존재함.

- 법원행정처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이는 재판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3,300여명에 이르는 판사 전원에 대하여 매년 평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임. 또한 평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

14) 변호사, 검사, 배심원, 소송당사자, 경찰관, 법원직원, 법원 통역사, 보호관찰소 직원, 지역 사회복지과 직원, 범죄 피해자, 항소심 법원 법관 등.